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서				
징 수 의 무 차	상 호(법인명)		대 표 자	
	사업장 주소			
	사업자등록번호		업 종	
승 인 기 간		년	ᅇ	징수분부터

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 · 납부할 수 있음을 승인하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